#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78

발의연월일: 2021. 12. 13.

발 의 자:김진표·고용진·김병기

김병주・박성준・신정훈

안규백 · 정일영 · 천준호

홍영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관리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보안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보안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유폴더 관리나 핵심 정보 이용기록 관리 등 낮은 수준의 보안조치조차 준수되고 있지 않은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보안관리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의 수립·이행 및 보안관리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안교육 실시를 보안관리 조치의 하나로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두텁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및 제42조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보안교육 실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보안책임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이행 및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정보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 인 이상의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장 자신을 보안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 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책임자가 사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안책임자의 변경

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자격요건
     을 갖추지 못한 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보안책임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② (생 략) 보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③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 는 연구개발기관은 대통령령으 -----보안교육 실 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 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 안관리 조치-----. 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보안책임자) ① 연구개 발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이행 및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 발정보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보안책임자를 지정 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장 자 신을 보안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 책임자가 사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안책 임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42조(과대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u>자</u>
  - 3.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보안

     책임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 과·징수한다.